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고죄 징역형의 단기 상향〉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4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가. 무고죄 일반론 및 외국 입법례	2
나.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 개관	5
다.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8. 29.
3. 회 부 일: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현행 1개월¹⁾ 이상인 무고죄 징역형의 단기를 1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임(안 제156조).

현행	개정안
第156條(誣告) 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 또는 懲戒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對하여 虛偽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6條(誣告) ----- ----- ----- ----- 1년 이상 10년 이하----- -----.

이는 무고로 인해 무고 피해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에서, 무고죄의 법정형 단기를 상향하여 무고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무고죄 일반론 및 외국 입법례

1)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무고죄는 로마법에서부터 연혁적으로 피무고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이해되었으나, 우리 형법은 독일제국형법전 및 1940년 일본 형법 가안의 영향을 받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중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의 영역에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무고죄가 보호하는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이고, 피무고자의 개인적 법익은 2차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됨.²⁾³⁾

특별법상으로는 「국가보안법」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⁵⁾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⁶⁾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를 무고한 경우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있음.

독일형법(제164조)이나 프랑스형법(제226-10조)이 무고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형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2) 김도형, 제11장 무고의 죄, 각칙 2, 주석형법 제5판, 106-107쪽

3) 판례도 무고죄는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봄.(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참조)

4)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생략)

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생략)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이 무겁고 법관에게 양형재량권을 더 넓게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⁷⁾

<무고죄 내용 및 법정형에 관한 외국 입법례>

국가	무고죄 내용 및 법정형 관련 법령
독일 형법	제164조(무고) ① 타인에 대한 관청의 절차 또는 기타 처분을 유발하거나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확실한 인식에 반하여 타인의 위법행위나 의무위반 사실을 관청, 고발 접수권이 있는 공무원이나 군상관에 대하여 또는 공연히 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한다.
오스 트리아 형법	제297조(무고) ① 직무상 형사처벌되어야 할 행위나 직무 혹은 신분적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하여 무고를 함으로써 타인을 관청의 소추 위험에 빠지게 한 자는, 그 내용이 허위인 점을 알고 있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수 벌금형 에 처하고,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가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규정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프랑스 형법	제226-10조(무고) 사법관, 사법경찰, 행정경찰, 관할 기관에 이를 이첩하거나 조치할 권한이 있는 기관, 직급상 상급자나 고용주에게 사법, 행정 또는 징계절차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자는 5년 이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에 처한다. 고소·고발된 범죄사실이 저질러지지 아니하거나 피고소·고발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무죄판결 또는 수사법원의 무혐의결정이 확정되면 고소·고발된 사실은 당연히 허위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 밖의 경우, 고소·고발자에 대한 소추를 심리하는 법원은 고소·고발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법	제1001조(진술 또는 제출) (a)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 연방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관할 내에 있는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아래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른 자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에, 범행이 국제 혹은 국내의 테러(제2331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와 관련된 경우에는 8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 해당 사건이 제109A장, 제109B장, 제110장, 제117장 또는 1951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 이 조에 따라 부과되는 징역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어떠한 속임수, 계략 혹은 계책으로 중요한 사실을 위조, 은닉 혹은 은

	폐하는 행위 (2)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허구 혹은 기만적인 진술 혹은 표현을 하는 행위 (3)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 허구 혹은 기만적인 진술 혹은 기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어떠한 허위의 문서 혹은 자료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
일본 형법	제172조(허위고소 등)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 고발 그 밖의 신고를 한 자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형법」이 무고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한 것은 무고죄의 죄질을 무고된 범죄의 실행보다 더 나쁘게 여겨왔던 전통적인 법감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재량의 폭을 넓게 한 것은 허위신고된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고죄의 불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⁸⁾

나. 법정형의 헌법적 기준 개관

법정형의 입법 분야에서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상의 지침으로는 비례원칙,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 명확성원칙을 들 수 있음.⁹⁾

i) 비례원칙은 법정형을 포함한 형사입법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

7) 이윤검, 무고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2014, 79쪽

8) 이형국, “무고죄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유일당 오선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2001), 244쪽

9) 이진국, 합리적 법정형의 입법 방안,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16쪽

을 위하여 투입된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입법을 통하여 투입하는 수단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투입하는 수단이 국민에게 가장 피해를 적게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입법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의 가치와 법익에 대한 제한의 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균형성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함.¹⁰⁾¹¹⁾

ii) 형벌체계 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¹²⁾은 법정형을 가중하는 입법의 경우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 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서는 아니되며,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함.

특히, 형사입법에서는 균형성 원칙이 행위규정과 제재규정 간의 비례관계를 심사대상으로 삼게 되며, 입법자가 신설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범죄구성요건에서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정형이 비례관계에 있는지가 균형성 원칙의 심사대상으로 됨.¹³⁾ 객관적으로 법정형을 범죄의 추상적 불법성에 비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10) 이진국, 앞의 책, 16쪽

11)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12)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13) 이진국, 앞의 글, 23쪽

법정형에 대한 균형성 원칙의 요청에 위반될 경우 책임주의¹⁴⁾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된다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됨.¹⁵⁾¹⁶⁾

다. 검토의견

「형법」상 무고죄에 대한 벌금형을 제외한 선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¹⁷⁾ 개정안은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 행사를 해치고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고통과 위협을 주는 무고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무고행위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음.¹⁸⁾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헌법재판소2010. 7. 29. 선고 2009헌가14 결정례)

15) 이진국, 앞의 글, 24쪽

16) 형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지 아니하고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며(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이에 위반되는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은 형벌법규의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례).

17) <양형기준 적용 대상 「형법」상 무고죄 전체사건 연도별 형량 비교> 단위: 명, 개월

영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감경	128	7.4	123	8.4	68	7.6	34	7.6	51	7.7
기본	253	8.7	197	9.9	170	10.0	125	10.8	146	11.2
가중	13	14.0	7	15.4	6	14.8	13	15.4	16	22.7
합계	394	8.5	327	9.4	244	9.5	172	10.5	213	11.2

자료: 2024 연간보고서, 양형위원회

18) 최근 10년간 「형법」상 무고의 죄의 제1심 사건 접수 평균은 970명이었음.

<최근 10년간 제1심 형사공판사건 「형법」상 무고의 죄 접수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1,455	1,511	1,384	1,166	958	872	556	471	623	706	970

자료: 2025 사법연감

첫째, 무고죄 법정형의 단기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형벌체계상 정당상과 균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소요죄(제115조) 및 특수손괴죄(제369조제2항)의 경우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의 단기를 제한하면서 벌금형을 함께 규정한 입법례도 있으나, 「형법」상 징역형의 단기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1년 이상으로 징역·금고형의 단기를 규정한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큰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불법성이 1년 이상의 징역형 단기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형법」상 단기 1년 이상 자유형 범죄 >

조문	죄명	자유형	벌금형
제111조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1년 이상 유기금고	-
제115조	소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제131조제1항·제2항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1조제2항	공용물의 파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67조제1항	일반물건 방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68조제1항	연소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72조제1항	폭발성물건파열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72조의2제1항	가스·전기등 방류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73조제1항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79조제1항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1년 이상 유기징역	-

	교통방해죄		
제193조제1항	수돗물의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195조	수도불통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207조제2항	내국유통 외화 위·변조죄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58조제1항·제2항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81조제1항 전단	체포·감금 치상죄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288조제1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89조제2항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331조제1항	손괴야간주거침입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350조의2	특수공갈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제363조제1항	상습 장물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368조제1항	중손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368조제2항	손괴치상죄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369조제2항	특수중손괴죄	1년 이상 유기징역	2천만원 이하

둘째, 모든 피무고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형의 단기를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과 이익도 2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¹⁹⁾ 피무고범죄의 죄질, 법정

19) 통설적 견해 및 판례(김도형, 각칙 2, 주식형법 제5판, 107쪽 참조)

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역형의 단기를 상향하는 것은 그 죄질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하여 무고죄로 고소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문제제기에 의해 무고죄의 가해자 신분으로 뒤바뀌게 되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신고를 위축시키거나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고죄의 징역형 단기를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셋째, 무고죄 법정형의 단기를 상향하는 것은 범익침해의 정도, 범죄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일률적으로 무고죄 법정형의 단기를 1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법원에서 무고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자유형의 법정 최저형 설정은 오히려 기존의 단기자유형을 회피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도피하는 벌금형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²⁰⁾

넷째, 현행 “무고범죄 양형기준”²¹⁾은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20) 박찬걸, 무고죄의 법정형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2023. 6),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36쪽

21)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임. 양형기준은 대법원규칙인 「양형위원회규칙」 제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음.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

야기,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등에 대해 가
중요소로 규정하고 있고,²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뇌물죄, 불법채포·감금 치상죄, 13세 미만 미
성년자 약취·유인죄, 상습 강도·절도, 보복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되는 점과,²³⁾ 양형위원회에서
무고범죄에 대한 기존 양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인 점²⁴⁾을 고려하
여 무고죄에 대한 과소처벌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

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
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
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7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2)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 인자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자백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3) 각주 5 참고

24) 2025. 6. 23.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함.

다섯째, 무고죄 징역형의 단기를 1년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제1심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므로,²⁵⁾ 법원의 인력 현황 및 사건 지연 우려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무고죄 법정형의 단기를 상향함으로써 국가의 심판기능을 해치고 피무고자에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고통과 위험을 주는 무고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는 인정되나, 무고죄 법정형의 단기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형벌체계상 정당상과 균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피무고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형의 단기를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검토가 필요함. 또한, 법관의 양형재량, 벌금형으로의 편중우려, 제1심 사물관할 변경에 따른 법원의 인력 현황 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

25)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 아. (생략)